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산로
198(학성동,지하1층)
[별지 제33호서식]

공증인 박우순 사무소

(전화) 033-744-7600
(팩스) 033-746-8811

등부 2025 년 제 300 호

인 증 서

위 사본은
본 사무소에서 원본과 동일
서류임을 증명함.
공증인 박 우 순

210mm X 297mm
보존용지(1종) 70g/㎡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
(통합 제23차 총회)의사록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 제23차 대의원총회) 회의록

1. 회의명칭 :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 제23차 정기대의원총회)
2. 소집통지 : 2025년 3월 4일(화)
3. 일　　시 : 2025년 3월 13일(목) 18시 30분
4.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5, 5층 원주밝음신협 대강당
5. 정 족 수 : 대의원 정수 102명 中 과반(52명 이상)인 62명 참석(최종 65명)으로 개회
6. 의장성명 : 이사장 이광희
7. 식　　순 : 가. 제1부 기념식
 나. 제2부 대의원 총회 본회의
8. 부의안건

제1호 의안 2024년 종합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결손금 처리안
제3호 의안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아이쿱 연대협력 선출) 임원 해임의 건
제5호 의안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차입금 최고한도액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2024년 (탈퇴, 제명, 감좌) 조합원 출자금 환급 및 지분양도, 출자금 변동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기타 안건

9. 총회경과 및 의안심의 내용

가. 제1부 기념식

1) 개회선언

- 신승훈 전무이사(이하 사회자)가 18시 35분에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 제23차) 기념식 개회를 알리다.
- 개회를 알리며 의료협동조합 30주년 기념영상을 상영하다.
- 이어서 생명의례를 진행하다.

2) 인 사 말

- 이광희 이사장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대의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안건 순서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하며 인사말을 전하다.

3) 내빈소개 및 축사

- 내빈소개로 원주밝음신협 이도식 이사장, 원주생협 이현주 이사장,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임지헌 센터장,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현귀 센터장 을 소개하고 인사말 및 축사는 생략하다.
-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 공증을 위하여 박우순 변호사가 참석하여 인사하다.

4) 우수직원 및 장기근속자 표창

- 우수직원으로 신옥경 부장, 염은경 과장이 장기근속자는 김현경 간호조무사, 김연화 요양보호사, 김경옥 요양보호사가 표창을 받다.

5) 단체사진 촬영

-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본회의로 넘어가다.

나. 제2부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 23차 대의원총회) 본회의

1) 성원확인 및 보고
- 이광희 이사장(이하 의장)이 의장석에 착석하고 성원 보고를 요청하여 신승훈 전무이사가 대의원 102명 중에서 62명(최종 65명)이 참석(과반수는 52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2) 개회선언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받고 의장이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 23차 대의원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3) 의사록 기명날인인 선임
- 의장이 의사록 서기 1명과 기명날인인 3인을 선임하고자 하며 참석 대의원 가운데 자발적으로 역할을 맡아주실 분이 있는지 물었으나 없음을 확인하고, 의장의 추천에 의해 서기는 신승훈 전무이사가 장성면, 염은경, 조주희 대의원이 의사록 기명날인인으로 추천되어 이에 의장이 동의를 묻자 참석 대의원 모두 박수로 찬성하여 의장이 서기로 신승훈 전무이사, 장성면, 염은경, 조주희 대의원이 기명날인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의장이 선언하다.

4) 전차회의록 낭독 및 승인
- 의장의 요청에 따라 신승훈 전무이사가 총회 자료집 12쪽 ~ 18쪽의 전차회의록을 안내하고, 의장이 이에 대한 참석대의원 의견을 묻자 백송희 대의원 동의, 김동필 대의원이 재청하고 참석대의원 모두 이의가 없다고 하여 전차회의록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5) 상정 부의안건 심의
- 의장이 제1호 의안부터 제8호 의안 순서대로 심의할 것을 제안하고, 부의안건을 의장의 제안대로 심의할 것을 참석 대의원에게 물어보다. 장성면 대의원 동의, 백송희 대의원 재청하고 참석 대의원 모두 동의하여 심의에 들어가다.

○ 제1호 의안 - 2024년 종합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의장의 요청으로 2025년 2월 13일에 장동성, 김달현 감사에 의해 실시된 조합의 종합감사 의견을 장동성 감사가 착석하여 보고하다. 장동성 감사가 자료집 20~22쪽 참조할 것을 주문하다.
- 의장이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자,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의장이 종합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해도 좋은지 묻자 백송희 대의원 동의, 서연남, 김동필, 김덕연 대의원 재청하고 이에 모두 동의하여 제1호 의안인 2024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다.

○ 제2호 의안 -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결손금 처리 안

- 의장이 신승훈 전무이사에게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다.
- 신승훈 전무가 자료집(23~87쪽)의 2024년 조합 활동 총평 및 결산 요약 등을 설명하다.
- 염은경 과장이 재택의료 및 통합돌봄사례를 발표한다.
- 조주희 팀장이 조합사업 및 활동 결과를 발표하다.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다른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서 내용과 잉여금 처리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승인해도 좋은지 묻자 허유정 대의원 동의, 권효정, 김덕연, 김연화 대의원 재청하고 이에 모두 동의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3호 의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의장이 신승훈 전무이사에게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다.
- 신승훈 전무이사가 의료기관 세부 주소지 명시, 조합의 지사무소 등 개정,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보완사항 반영, 사업의 종류 추가 에 대해(자료집 88쪽~90쪽)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하다.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참석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다른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창희 대의

원 동의, 장동성, 권효정, 백송희 대의원 재청하고 이에 모두 동의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4호 의안 - (아이쿱 연대협력 선출) 임원 해임의 건

- 박준영 대의원(대표 발의자)이 임원 해임의 건(자료집 91쪽~93쪽)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하다.
- 의장이 대의원 정수 102명 중 5분의 1 이상인 24명이 총회 안건으로 해임안 상정을 동의했으며 해임안에 따른 이유를 10일 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도 주었으나, 김유미, 김은주, 차윤정 임원이 수취거부, 연락두절 하였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다.
- 의장이 대의원에게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참석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다른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백송희 대의원 동의, 김덕연 대의원 재청하고 참석 대의원 모두 동의하여 김유미, 김은주, 차윤정 임원의 해임안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5호 의안 -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이 신승훈 전무이사에게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다.
- 신승훈 전무이사가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자료집 95쪽~136쪽)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하다.
- 노인공동생활가정추진위원회 천혜란 위원장이 공생추진위의 25년 사업 계획 및 활동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다.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자 참석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다른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승인해도 좋은지 묻자, 김덕연 대의원 동의, 노혜정 대의원 재청하고 이에 모두 동의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6호 의안 - 차입금 최고한도액 승인의 건

- 의장이 2025년 신규 차입금 최고 한도액(안)을 20억 원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참석 대의원의 의견을 묻자 임지헌 대의원 동의, 조미화, 권효정 대의원 재청하고 이에 모두 동의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7호 의안 - 2024년 (탈퇴, 제명, 감좌) 조합원 출자금 환급 및 지분양도, 출자금 변동 승인의 건

- 의장이 신승훈 전무이사에게 2024년 (탈퇴, 제명, 감좌) 조합원 출자금 환급 및 지분양도, 출자금 변동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다.
- 신승훈 전무이사가 2024년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및 출자금 변동 (자료집 138~140쪽)에 따른 명단(탈퇴, 제명, 양도)과 출자좌수 및 출자총액을 설명하다.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참석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다른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승인해도 좋은지 묻자 김연화 대의원 동의, 김덕연 대의원 재청하고 이에 모두 동의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1. 출자좌수 : 27,195좌
2. 출자총액 : 271,956,874원

○ 제8호 의안 - 기타 의안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안이 있으면 상정해줄 것을 요청하다.
- 도경숙 대의원이 가정간호센터와 관련한 연혁 및 내용들을 총회자료집 및 홈페이지에 수정 보완해줄 것을 요청하다.
- 임종호 대의원이 32쪽 출자액 관련 질의를 하고 신승훈 전무이사와 의장이 이에 대한 설명을 하다.
- 의장이 또 다른 안건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자. 참석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다.
- 의장이 더 이상 발언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상의 부의 안건을 모두 승인 후, 제11차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기대의원총회(통합 23차)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 시간은 20:14분임.
- 의장이 총회에 참석해 준 대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하다.

7) 폐회선언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서기, 총회에서 기명날인 인으로 선출된 4명(서기 포함)의 대의원이 기명날인 또는 기명하기로 하다.

2025년 3월 13일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　　장 : 이사장 이광희 (인)

기명날인인 : 대의원 장성면 (인)

기명날인인 : 대의원 염은경 (인)

기명날인인 : 대의원 조주희 (인)

서　　기 : 대의원 신승훈 (인)

신·구 조문 대비표

(2025. 3. 13. 개정)

현행	개정안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5(중앙동)번지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조합의 지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113(원동), 1층에 둔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5(중앙동)번지 4층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조합의 지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113(원동), 1층에 둔다.~~
제4조2(의료기관의 소재지) ①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밝음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5(중앙동)번지에 둔다. ②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주치의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113(원동), 1층에 둔다.	**제4조2(의료기관의 소재지)** ①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밝음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5(중앙동)번지 4층에 둔다. ~~②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주치의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113(원동), 1층에 둔다.~~
제18조(출자) ⑤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대비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출자)** ⑤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휴업 또는 계속 12. (신설) 차입금을 통한 기본 자산의 취득과 처분
제34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4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신설)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45조(임원의 선임)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선임)** ③ (신설)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신설)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5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 의무가 있다. ⑤ (신설) 제1항~제4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임원의 해임)** ③ (신설)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1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신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57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다음 각호중 하나로 한다. 1. 수지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2.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 목적에 해당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제57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지역사업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가. (신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나. (신설) 가~나의 사업 활성화 및 통합을 위한 지원사업 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지역사업형으로 수입지출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정한다.
제58조(사업의 이용) ③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	**제58조(사업의 이용)** ③ 제2항에 따른 총 공급량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 공급량을 산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산로
198(학성동,지하1층)
[별지 제37의2호서식]

공증인 박우순 사무소

(전화) 033-744-7600
(팩스) 033-746-8811

등부 2025 년 제 300호

인 증

위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

2025년 03월 13일자 제 11차 정기대의원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의장 이사장 이광희, 대의원 장성면, 동 염은경, 동 조주희 외 1명--

대리인겸대의원 신승훈은----------

본 공증인은 위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그 결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검사 내용과 아래 기재자료에 의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

함을 확인하였다. ----------

2025년 03월 18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인 박우순 사무소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산로 198(학성동,지하1층)

공 증 인

아 래

1. 참석자명부	6. 인감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확인서----------
3. 정관	8. 진술서----------
4. 운전면허증	9. 공고문----------
5. 위임장,----------	

210mm X 297mm
보존용지(1종) 70g/㎡